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1.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

입소정원】

- ① 닥터M의 입소정원은 38인으로 한다.

【입소대상자】

-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받은 자
⇒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 파킨슨병이나 노인성 뇌혈관 질환 대상자로 장기요양등급 1, 2등급 판정자
⇒ 3.4.5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써 [시설급여] 이용가능 자
-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 피해 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어르신
- ③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,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할 사람이 없는 어르신으로 관할 시군구청에서 입소결정이 통보된 어르신

【모집방법】

- ①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 상담 및 홈페이지와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을 통하여 입소자를 모집한다.

2.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(계약목적, 계약기간 ,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, 신원인수인의 권리·의무,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)

【계약목적】

- ①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인정등급(시설서비스 가능 등급)을 받은 분들에게 일상생활, 의료, 재활, 여가, 치매 예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【계약기간】

- ① 입소자는 본 시설에 입소한 날로부터 1년 또는 장기요양보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기간으로 하되, 닥터M요양원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입소자와 그의 가족이 성실히 준수하여 닥터M요양원에서 계약해지통보 또는 본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1 년 단위의 계약을 자동 연장할 수 있다.

【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】

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.

구 분(1일수가)		본 인 부 담 금(30일기준)		
		일 반 (20%)	경 감 (12%)	경 감 (8%)
본인 부담금	1등급(71,900)	542,700	325,6220	217,080
	2등급(66,710)	503,460	302,080	201,380
	3~5등급(61,520)	475,440	285,260	190,180
비 급 여	식재료비 (식사+간식포함)	315,000 1일 식사 3,500*3회=10,500 1일 간식비 1,500*1회=1,500	315,000 1일 식사 3,500*3회=10,500 1일 간식비 1,500*1회=1,500	315,000 1일 식사 3,500*3회=10,500 1일 간식비 1,500*1회=1,500
합 계	1등급	902,700	685,620	577,080
	2등급	863,460	662,080	561,380
	3~5등급	835,440	645,260	550,180

【신원인수인의 권리 · 의무】

【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】

【입소자의 의무】

【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처리절차】

- ① 간호(조무)사의 활동사항
- ②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
-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
- ④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
- ⑤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
- ⑥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